

2025년도 2분기 상시필기 해기사 시험 시행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2025-121호

2025년 2분기 상시필기 해기사 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시험 직종 및 등급

가. 상시필기시험 회별 시행 직종 및 지역

구분	시험일	시행 등급 및 직종	시행지역별 인원(명)		
			부산	인천	목포
10회	2025. 4. 16.(수)	3·5급 항해사(상선, 어선, 교류, 한정)	200	160	100
		3·5급 기관사(한정 포함)			
11회	2025. 4. 17.(목)	4·6급 항해사(상선, 어선, 교류)	200	160	100
		4·6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12회	2025. 4. 18.(금)	소형선박조종사	200	160	100
		소형선박조종사			
13회	2025. 6. 18.(수)	1·2급 항해사(상선, 어선, 교류)	200	160	100
		1·2급 기관사			
14회	2025. 6. 19.(목)	3·5급 항해사(상선, 어선, 교류, 한정)	200	160	100
		3·5급 기관사(한정 포함)			
15회	2025. 6. 20.(금)	소형선박조종사	200	160	100
		소형선박조종사			

※ 시험장소 등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회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역별 시험장소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등(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인천 중구 인증로 176 나성빌딩 4층)
-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306호 등(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 시험 시행지역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험방법 :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시험)

- PBT(OMR 답안 작성) 시행 시 시험일 일주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 SMS로 안내

2. 응시원서 접수

가. 회별 접수기간

구 분	접수일	접수시간
10~12회	2025. 4. 8.(화)	☞ 접수일 10:00부터 18:00까지 ※ 정원제 운영으로 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 정원이 마감된 경우 접수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 불가, 접수기간 중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접수는 가능
13~15회	2025. 6. 10.(화)	

나.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정원 내 선착순 마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 원서접수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해기사 → 접수
- 응시원서 작성
 - 인터넷접수는 응시자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한번 등록한 개인정보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휴대폰 번호 등은 항상 최신화해야 시험 정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인터넷(모바일 등) 접수는 접수 요건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며, 접수내용의 수정 및 정정이 제한되고 접수오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상시필기시험은 면접시험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 1·2급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에 별도로 면접시험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응시는 회별 1개 직종만 응시 가능합니다.

4. 교류시험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직종을 “교류(상선 or 어선)”로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5. 면허전환(통신사 → 항해사)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해당직종 및 등급을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통신사면허를 받고 6년 이상 경력의 통신사) 또는 “해당없음”으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6. 소형선박조종사 원서 접수 시 동력수상레저면허 소지자는 면제요건에 “해당없음” 선택, 4과목 응시 후 합격해야 면허 발급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구 분	금 액
1~2급(항해사 · 기관사)	15,000원
3~4급(항해사 · 기관사)	14,000원
5~6급(항해사 · 기관사)	13,000원
전자기관사	14,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3.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구 분	합격자 발표일시	결과 확인방법
10~12회	회별 시험시행일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 접수 및 합격자 정보 → 합격정보 → 확인 ○ 단문자(SMS) 발송 : 접수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13~15회	회별 시험시행일 17:00	

4.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가.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 원서접수(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나.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 원서접수(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및 교통비 취소 수수료 등을 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 6-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6-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6-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6-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6-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5.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가사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응시생 주의사항

- 가.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접수 완료 후 응시표에 표기되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마. 응시자는 대기시간 및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태블릿,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의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 바. 상시필기시험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아. 면허발급 신청은 해기사시험 최종 합격 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면제요건 등 사전 확인사항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2012.10.31)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응시원서만 제출
- ▶ 필기시험 전부면제(면접응시) 또는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
- ▶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 **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예시1)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함정경력은 2011.02.14.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

예시2) 교류시험 응시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접수 가능

- 어선 3급 면허 소지자 → 상선 3급 교류시험 응시

예시3) 통신사 경력자 → 항해사 시험 중 필기 과목면제(법규, 영어, 전문)

- 통신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통신사 경력 소지자

예시4) 승무경력기간 계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 콜센터 ☎ 1899-3600, FAX 051-624-9081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 능력평가팀 : ☎ 051-620-5831~6, FAX 051-626-7556